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브이아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 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브이아이 도시화속의 아시아 우량기업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이아이 도시화속의 아시아 우량기업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명 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브이아이 도시화속의 아시아 우량기업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65631**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브이아이자산운용㈜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및 온라인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viamc.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21년 2월 28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1년 3월 17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viamc.kr), 각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요 약 정 보 **5**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0**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2**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위험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46**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52**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8**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 요 약 정 보 >	작성기준일 : 2021.02.28.
브이아이 도시화속의 아시아 우량기업 증권 자투자신탁 1 호[주식]	[펀드코드 : 65631]

투자 위험 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브이아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아시아(호주포함) 관련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 투자하는 상품으로 가격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본손실위험, 투자대상국가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브이아이 도시화속의 아시아 우량기업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아시아(호주포함) 관련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 합니다.

2. 투자전략

가.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호주포함) 지역의 도시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원자재, 설비, 운송, 에너지 등의 기업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인 '**브이아이 도시화속의 아시아 우량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100% 이하를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입니다.

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투자비중
브이아이 도시화속의 아시아 우량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주식 및 해외주식에 60% 이상. 단, 해외주식에 60%이상 투자 - 주식에의 투자는 아시아(호주포함)지역의 도시화와 관련된 기업 주식에 투자할 예정 - 도시화관련 산업은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상하수도, 대중교통시설 등의 물리적 사회기반 시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보안서비스, 문화/미디어 등 소프트한 산업을 포함. - 도시화관련 기업은 물리적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본재, 원자재, 설비, 운송, 에너지 분야의 기업 및 제약, 보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도 의미합니다. - 아시아(호주포함)지역의 기업주식은 아시아 국가 주식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기업과 아시아 지역에서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아시아 이외 지역에서 설립된 기업 등을 포함 - 미국달러에 대해서 80 ± 20%의 비중을 목표로 환위험 제거 예정	100% 이하

다. 환위험관리전략

이 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미국달러에 대하여 80% ± 20%의 비중을**

목표로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등을 사용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미국 달러 이외의 개별국가 통화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할 때, 해당국가의 급격한 환율변동 등 당해 통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상황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환헤지 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헤지는 불가능하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추가형(추가납입가능),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종류(클래스)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단위:%)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21.01.29 기준)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이내	1.985	1.0	1.81	325	553	788	1,277	2,62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	2.085	1.1	1.94	237	481	730	1,250	2,67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1.885	0.9	1.58	215	437	664	1,139	2,450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수수료선취-오프라인)와 종류 C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9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35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클래스에 비해 일반적으로 투자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20.03.01 ~ 21.02.28	19.03.01 ~ 21.02.28	18.03.01 ~ 21.02.28	16.03.01 ~ 21.02.28	07.02.26 ~ 21.02.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2007.02.26	51.44	29.49	12.55	13.96	4.46
비교지수(%)		36.62	15.64	6.97	12.66	4.03
수익률 변동성(%)		20.53	16.69	16.58	15.12	15.12

주1) 비교지수 : MSCI AP ex Japan 90% + Call 10%(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2021.02.28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 60 주식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박성구	1971	책임(본부장)	6개	604억원	54.46	32.14	54.46	32.14	11 년 8 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

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기의 운용현황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인 경우에 해당 됩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책임운용전문인력으로 운용한 성과를 의미하며, 1년 미만의 수익률은 제외됩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용펀드 기준으로 보수차감 전 수익률입니다.

주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6)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며, 모투자신탁은 아시아(호주포함) 지역의 도시화 관련 기업의 주식, 채권, 어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위험회피목적),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 아시아 경제 및 정치환경, 환율변동 등 해외 경제지표의 변화 및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 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호주포함) 지역의 도시화 관련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대상 국가의 위험에 크게 노출됩니다.
투자대상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아시아(호주포함) 지역의 도시화 관련 기업의 주식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결정되므로 투자하는 지역(아시아)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또는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위험에 노출됩니다. 아시아 지역의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는 글로벌 시장, 선진국가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국가 정책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호주포함) 지역에 주로 투자하므로 다수의 여러 국가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에 비해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호주포함) 지역의 도시화 관련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도시화 관련 산업은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상하수도, 대중교통시설 등을 의미 하며 도시화 관련 기업은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본재, 원자재, 설비, 운송, 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한정된 투자대상, 산업섹터, 업종 또는 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

		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더 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표시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환헤지를 실행하는 투자신탁으로서,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상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투자위험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수수료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viamc.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해외주식투자 전용집합투자 증권저축 가입자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는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을 과세대상이익에서 제외합니다.
	※ 세제혜택 및 과세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브이아이자산운용㈜ (대표번호: 02-727-27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viamc.kr)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 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효력발생일	2021년 3월 17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viamc.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47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종류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	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9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9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며, 집합투자증권 매수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 환매시 판매사가 정하는 판매수수료의 비율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9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9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및 일정금액 이상 납입한 투자자 등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viamc.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viamc.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viamc.kr)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종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브이아이 도시화속의 아시아 우량기업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65631**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65632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65633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92605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68420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68754
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69214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A7639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AS059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BP21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용어에 관한 사항은「펀드용어의 정리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1좌당 1원, 최초설정시)로 모집합니다.

주1) 모집(판매) 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 되거나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 또는 예정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각 판매회사 본·지점 및 온라인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viamc.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종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브이아이 도시화속의 아시아 우량기업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65631**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65632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65633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92605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68420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68754
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69214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A7639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AS059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BP21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7-02-26	최초설정
2007-04-25	약관변경(클래스 C3, C4 신설)
2007-05-17	약관변경(클래스 C5 신설)
2007-06-13	약관변경(클래스 C4 보수변경)
2007-08-14	약관변경(클래스 C4 판매기준 변경 및 추가)
2008-01-23	약관변경(총좌수 변경)
2008-09-18	집합투자업자 상호변경(CJ자산운용㈜ → 하이자산운용㈜)
2008-10-06	투자신탁명 변경(CJ Asia Infra 주식형 자투자신탁1호 → 하이 Asia Infra 주식형 자투자신탁1호)
2009-05-02	- 약관변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변경) - 투자신탁명 변경(하이 Asia Infra 주식형 자투자신탁1호 → 하이 아시아 인프라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2010-01-11	신탁계약 변경(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0-03-16	신탁계약 변경(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0-05-03	신탁계약 변경(종류 C1의 판매회사보수율 인하)
2010-11-12	- 신탁계약서 변경(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책임투자운용인력 변경("김규훈"에서 "신동혁"으로 변경)
2011-05-30	외국상장주식의 과세이익 상계기간 연장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2011-12-05	신탁계약 변경(종류 C-E 수익증권 추가 : 판매회사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2012-06-18	신탁계약 변경(수시공시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3-01-07	책임투자운용인력 변경("신동혁"에서 "김규범"으로 변경)
2013-05-29	신탁계약 변경(보고서 교부 방법 및 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2013-11-29	- 신탁계약 변경(수익자총회 등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사항 반영(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변경)
2014-01-20	- 투자신탁명 변경(하이 아시아 인프라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 하이 도시화속의 아시아 우량기업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자투자신탁명 변경 -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운용 해지 및 해외투자자문 시행 -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일부 정정 - 책임투자운용인력 변경("김규범"에서 "박성구"로 변경)
2014-04-29	신탁계약 변경 - 종류 S 수익증권 신설 - 선취판매수수료 부과비율 정정
2015-05-15	신탁계약 변경(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법 개정사항 반영)
2016-02-26	· 신탁계약 변경 - 종류 C-W 수익증권 신설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공시 및 보고서) · 모투자신탁의 해외주식 투자한도 변경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반영
2016-03-31	· 신탁계약 변경(종류 C-W 수익증권 삭제 : 중복기재) · 모투자신탁의 투자자문회사 변경 (INVESCO Hong Kong Limited → UBP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
2016-07-02	-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5단계 체계 → 6단계 체계) - 위험등급 변경 : 1등급(매우 높은 위험)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2016-07-18	신탁계약 변경(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
2016-07-30	신탁계약 변경(증권시장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변경)
2017-04-29	신탁계약 변경(종류 C-G 수익증권 신설)
2019-09-16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및 종류(클래스) 한글명칭 부여 반영 신탁계약 변경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반영
2020-01-17	신탁계약 변경 - 집합투자업자명 변경 : 하이자산운용㈜ → 브이아이자산운용㈜ - 투자신탁명 변경 : 하이 도시화속의 아시아 우량기업 증권 자투자신탁 1 호[주식] → 브이아이 도시화속의 아시아 우량기업 증권 자투자신탁 1 호[주식]
2020-03-12	신탁계약 변경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의무해지 등)
2020-04-28	신탁계약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신탁계약서 기재사항)
2020-09-30	· 컷-오프제도(펀드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개편) 시행 - 판매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일부개정

	· 집합투자규약 변경(2020-10-05 시행)
2021-03-17	투자위험등급 변경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 2등급(높은 위험)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 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브이아이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Three IFC 16층) 02-727-2700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	직위	운용경력년수 (2021.02.28 현재)	이 력
박성구	1971	책임운용역 (본부장)	11년 8개월	고려대학교 경영학 하이투자증권 리서치(`99.12~`03.08) 현 브이아이자산운용 Global사업본부(`06.04~현재)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021.02.28 현재)

성명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60주식형)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박성구	6개	604억원	54.46	32.14	54.46	32.14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기의 운용현황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인 경우에 해당 됩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책임운용전문인력으로 운용한 성과를 의미하며, 1년 미만의 수익률은 제외됩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용펀드 기준으로 보수차감 전 수익률입니다.

주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6)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다. 책임투자운용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투자운용인력	운용 기간
기 준 환	2007-02-26 ~ 2007-04-01
진 성 남	2007-04-02 ~ 2009-12-31
김 규 훈	2010-01-01 ~ 2010-11-11
신 동 혁	2010-11-12 ~ 2013-01-06
김 규 범	2013-01-07 ~ 2014-01-19
박 성 구	2014-01-20 ~ 현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브이아이 도시화속의 아시아 우량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과 같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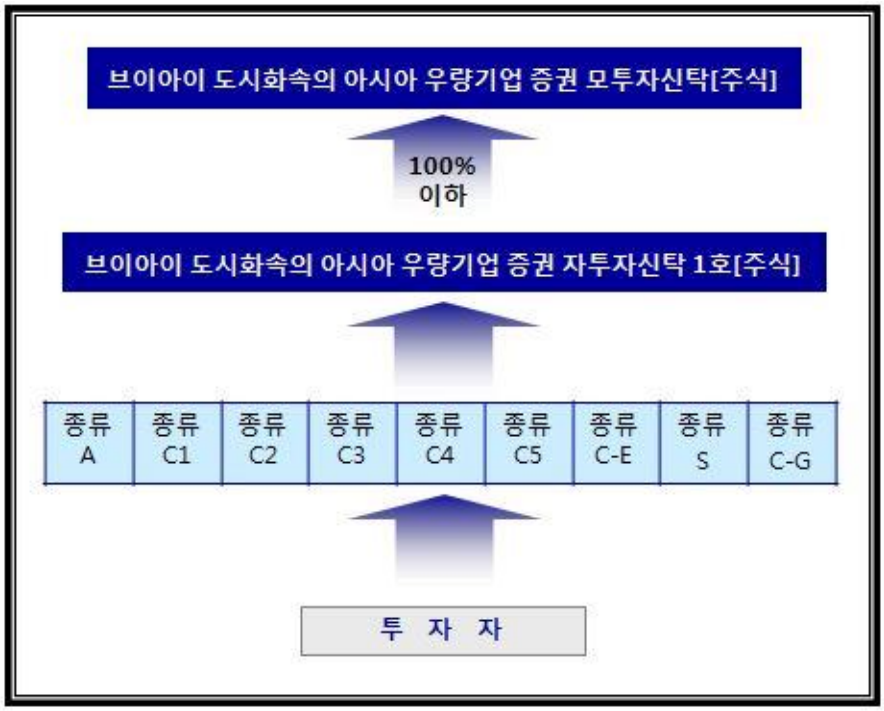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수료, 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하지만 종류의 수 및 구분에 관계 없이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일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운용행위는 종류간의 차별 없이 통합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	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9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9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며, 집합투자증권 매수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 환매시 판매사가 정하는 판매수수료의 비율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9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9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및 일정금액 이상 납입한 투자자 등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1)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가입자격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제한없음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수익자가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판매회사의 특정금전신탁인 경우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수익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납입금액이 100억 이상인 개인 또는 500억 이상인 법인 라. 법에 의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다만, 제4호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를 제외한다)
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납입금액 200억원 이상인 법인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경우

(2) 보수 및 수수료 차이

종류		수수료			보수(%)			
		선취판매 (납입금액 기준)	후취판매 (환매금액 기준)	환매 (이익금 기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1.0% 이내	-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0.9	1.0	0.06	0.025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		0.9	1.1	0.06	0.025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	-		0.9	1.0	0.06	0.025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	-		0.9	0.0	0.06	0.025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	-		0.9	0.03	0.06	0.025
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	-		0.9	0.05	0.06	0.025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		0.9	0.9	0.06	0.025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0.15% 이내		0.9	0.35	0.06	0.025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		0.9	0.95	0.06	0.025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부과됩니다.

주2) **선취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후취판매수수료는 3년 미만 환매시 부과됩니다.**

주3) 보수(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는 순자산총액의 연간 %를 기준으로 하며, 매3개월마다 지급합니다.

주4) 보수 외의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부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브이아이 도시화속의 아시아 우량기업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등록신청서 제출일 : 2009.04.16]	주요투자대상	- 주식 및 해외주식에 60% 이상. 단,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 - 채권 및 해외채권에 40% 이하 투자 - 어음(A2- 이상) 등 40% 이하 투자
	투자목적	아시아(호주포함) 지역의 도시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원자재, 설비, 운송, 에너지 분야의 기업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익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주식에의 투자는 아시아(호주포함) 지역의 도시화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 - 도시화관련 산업은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상하수도, 대중교통시설 등의 물리적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보안서비스, 문화/미디어 등 소프트한 산업을 포함. 도시화관련 기업은 물리적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본재, 원자재, 설비, 운송, 에너지 분야의 기업 및 제약, 보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도 의미함 - 아시아(호주포함) 지역의 기업주식은 아시아 국가의 주식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 예정 기업과 아시아 지역에서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기업 등을 포함함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 아시아(호주포함) 관련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를 투자하고,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주식형)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의 특성에 알맞게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 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의 종류 / 투자한도 / 투자대상의 조건)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100%이하	브이아이 도시화속의 아시아 우량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② 단기대출	10%이하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③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에 한함
다만,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의 경우에는 상기의 투자대상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은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브이아이 도시화속의 아시아 우량기업 증권 모투자신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①주식	60%이상 **다만, 해외주식에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①-2해외주식		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②채권	40%이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주권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②-2해외채권		②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다만, ②에서 적용하는 신용평가등급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사채권의 경우 2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BBB 이상)를 받은 것
③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인 것,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과 양도성 예금증서
④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⑤파생상품	(위험평가액기준)10% 이하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다만,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⑥집합투자증권	40%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⑦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⑧증권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⑨증권차입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⑩단기대출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⑪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⑫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의 경우에는 상기의 투자대상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은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의 투자대상 ⑦부터 ⑩까지 및 아래의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②부터 ⑧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아래의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⑨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아니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상기에서 정하는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브이아이 도시화속의 아시아 우량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장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③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 파생상품 매매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파생상품투자	⑤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에 따른 위험회피거래를 제외한 명목계약금액을 말한다)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월간
	⑥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⑦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⑧ 집합투자증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 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⑨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	
⑩후순위 사채권	이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 사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아시아(호주포함) 지역의 도시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투자하는 증권 집합투자기구(주식형) 입니다.

당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 등 외화 자산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 비교지수 : MSCI AP ex Japan 90% + Call 10%

주1)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요 투자대상과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주2) 비교지수 : MSCI AP ex Japan 지수는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수이며, 콜금리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극히 단기의 자금대차인 콜에 대한 이자율입니다.

주3) 선정사유 : MSCI AP ex Japan 지수는 글로벌 증시의 현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며, 콜금리는 단기적으로 유동적인 자금의 금리를 대표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과의 비교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브이아이 도시화속의 아시아 우량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1. 자산운용의 기본방침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호주포함) 지역의 도시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투자자문업자인 "**UBP 에셋 매니지먼트 아시아 리미티드(UBP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로부터 모델포트폴리오 및 유무선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포트폴리오 리뷰 등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투자자문업자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UBP 에셋 매니지먼트 아시아 리미티드(UBP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 : 홍콩에 기반을 두고, 동경, 대만, 상해, 싱가포르 사무소와 함께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주식시장에 전문성을 두고 있으며, 당 펀드에는 운용역, 리서치 등을 포함하여 35명 수준의 UBP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자문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1) 주식에의 투자

① 주식에의 투자는 아시아(호주포함) 지역의 도시화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주식에 집중투자 할 예정입니다.

② 도시화관련 산업은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상하수도, 대중교통시설 등의 물리적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보안서비스, 문화/미디어 등 소프트한 산업을 포함합니다. 도시화관련 기업은 물리적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본재, 원자재, 설비, 운송, 에너지 분야의 기업 및 제약, 보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도 의미합니다.

③ 아시아(호주포함) 지역의 기업주식은 아시아 국가의 주식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 예정 기업과 아시아 지역에서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기업 등을 포함합니다.

(2) 채권에의 투자

① 채권에는 국내 및 해외채권에 40%이하, 어음(A2-이상) 등에 40%이하로 투자 하며 투자자의 환매요청에 원활한 대응을 위한 유동성 관리의 목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② 또한 해외투자자금의 일부를 투자대기자금의 성격으로 해외 채권 및 해외 채권형 펀드 등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2. 상세운용전략

(1) 주식투자전략

① 투자가치가 높은 회사의 주식에 초점을 맞추어 장기적으로 업종평균 이상의 수익률 성장이 기대되는 주식에 투자

② 장기적인 분석 및 예측을 바탕으로 투자대상 종목을 선택

③ 벤치마크(시장 수익률)를 추종하기 보다는 Total Return 추구 → Tracking Error 발생 가능

④ Market cap(시가총액 대비 종목별 비중)과 관련 없이 모든 주식을 같은 가중치로 접근

(2) 종목 선정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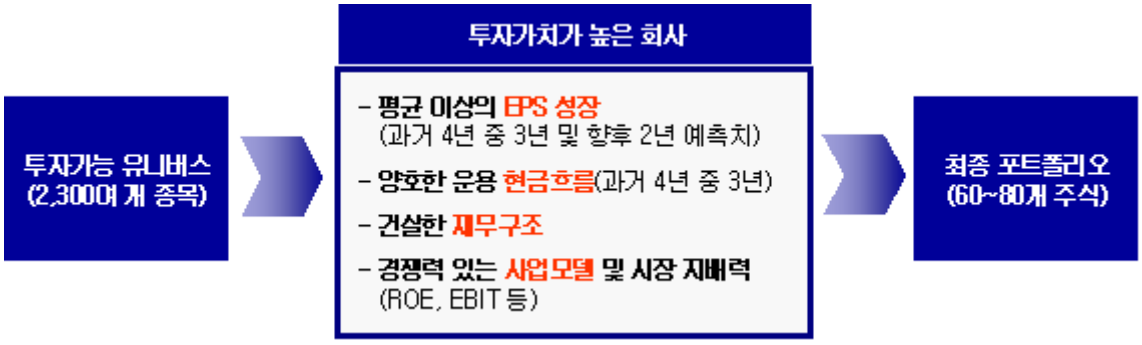

[참 고]

① EPS(Earning Per Share, 주당 순이익) : 당기순이익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으로 EPS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실적이 양호하다는 의미이며 배당 여력도 많다는 의미

② ROE(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주주들이 투자한 돈으로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③ EBIT(Earnings before Interests and Taxes, 세전 영업이익) :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일반적으로 매출이익에서 판매 및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것)에서 비영업 활동으로 인한 손익을 차감하고 영업외손익과 특별손익 중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을 더한 금액

3. 환위험 관리전략

① 미국 달러화와 한국 원화 간에는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등을 사용하여 환위험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②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주식 등은 미국달러 등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비록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달러에 대해서 80 ± 20%의 비중을 목표로 환위험 제거를 실행할 예정이지만, 다른 통화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손실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③ 미국 달러 이외의 개별국가의 통화에 대해서는 해당국가의 급격한 환율변동이 예상되는 등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할 때 통화에 있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외에는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④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헤지는 불가능하며,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⑤ 환헤지의 기본목적은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4. 투자대상국가의 현황

투자대상국가	국가현황	
중국	면적	약 960㎢
	수도	베이징
	투자포인트	방대한 경기부양 정책 실시. 개혁 개방정책이 진행되고 있어 지난 수년간의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전망. 강한 내수 기반도 중국 경제의 장점
홍콩	면적	1,104㎢
	수도	홍콩은 도시 국가로 특정 수도가 없음
	투자포인트	금융업과 국제무역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 서비스업이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체 노동력의 4/5를 고용. 자유 무역 정책, 유리한 입지, 최첨단 항구시설, 숙련된 노동력으로 대외무역의 중심지 역할
대만	면적	36,000㎢
	수도	타이베이
	투자포인트	제조업, 국제무역, 서비스업에 기초한 경제. 수출에 크게 의존하며, 미국 일본 중국이 주요 거래 시장
호주	면적	768만㎢
	수도	캔버라

	투자포인트	세계적인 광물 및 금속 생산국. 3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여 노동력을 3/4를 고용, 국내총생산의 2/3을 차지
인도	면적	3,287,590㎢
	수도	뉴델리
	투자포인트	우수하고 풍부한 인력, 잘 정비된 공업기반으로 양호한 경제성장 여건을 가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저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등 소득격차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
싱가폴	면적	707㎢
	수도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임
	투자포인트	고도로 발달한 시장기반 경제. 역사적으로 수출입 무역에 의존하여 발달. 가장 시장경제 친화적인 정책과 환경으로 평가받음
한국	면적	9만 9538㎢
	수도	서울
	투자포인트	수출 지향적 경제 성장으로 경제 고성장. 특히 철강, 전자, 조선산업에 있어 세계적인 수준
말레이시아	면적	329,758㎢
	수도	쿠알라 룸푸르
	투자포인트	원자재 생산과 수출에 의존. 1인당 GNP가 브루나이와 싱가포르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3번째로 높음
필리핀	면적	300,800㎢
	수도	마닐라
	투자포인트	농업, 경공업, 서비스업에 기반. 미국과 일본이 주요 무역상대국이며 해외 근로자들이 보내는 송금이 중요한 외화 수입원임
태국	면적	514천㎢
	수도	방콕
	투자포인트	서비스업, 경공업, 농업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 농업부문에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 종사
인도네시아	면적	190만㎢
	수도	자카르타
	투자포인트	농업과 광업에 기반. 1980년대 중반부터 제조업이 확대되어, 화학제품 전자부품 시멘트 고무타이어 종이 섬유 등 주로 생산.

주1) 투자대상국가의 현황은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당해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그 투자대상국가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투자신탁의 비교지수 : MSCI AP ex Japan 90% + Call 10%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아시아(호주포함) 지역의 도시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로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상품 가입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며, 모투자신탁은 아시아(호주포함) 지역의 도시화 관련 기업의 주식, 채권, 어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위험회피목적),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 아시아 경제 및 정치환경, 환율변동 등 해외 경제지표의 변화 및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 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호주포함) 지역의 도시화 관련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대상 국가의 위험에 크게 노출됩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채권은 미래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격변동위험과 쿠폰의 재투자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의 상환만기를 가진 채권은 단기의 상환만기를 가진 채권에 비하여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가치의 변동이 크게 나타납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 대부분이 상환되는 시기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의 중도매도에 따른 자본손실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은 일정 매기마다 수령하는 이자액(Coupon)을 다시 재투자 했을 때의 수

	익률 변동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중간에 수령하는 이자액을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동일하게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채권시장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으므로, 만약 지급 받은 이자액을 재투자하는 시점에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 투자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 어음,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 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신탁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 투자신탁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금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신탁의 적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비용의 증가,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위험	이 투자신탁은 장내파생상품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함)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은 특성상 기초자산의 시장가격 변동보다 더 큰 손익을 가져오는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크게 투자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종류에 따라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장내파생상품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함)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특성으로 인한 레버리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 움직임이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옵션에 투자할 경우,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 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파생상품의 계약 만기 시 동 계약을 차근월물 등으로 이전(roll over)하여 파생상품 운용을 지속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차근월물 간의 가격차이 등으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위험	이 투자신탁은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함)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는 장외파생상품에 속합니다. 장외시장거래는 개별적인 계약이므로 표준화된 장내시장과 달리 참여자들에게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호장치가 제공되지 않으며,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거래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외시장은 장내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적으므로 계약 청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매연기 등으로 인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증권 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자산을 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 만큼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로 운용할 수 있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 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RP매입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정기예금, RP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대출(콜론)및 예금잔액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단기대출로 운용할 수 있으며, 단기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 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대상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아시아(호주포함) 지역의 도시화 관련 기업의 주식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결정되므로 투자하는 지역(아시아)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또는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위험에 노출됩니다. 아시아 지역의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는 글로벌 시장, 선진국가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국가 정책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호주포함) 지역에 주로 투자하므로 다수의 여러 국가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에 비해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호주포함) 지역의 도시화 관련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도시화 관련 산업은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상하수도, 대중교통시설 등을 의미 하며 도시화 관련 기업은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본재, 원자재, 설비, 운송, 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한정된 투자대상, 산업섹터, 업종 또는 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더 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표시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환헤지를 실행하는 투자신탁**으로서,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투자신탁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특정국가의 세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하여 투자신탁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 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자문업자의 자문을 바탕으로 하여 투자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 투자자문업자의 업무능력이 훼손될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필요시 투자자문업자가 변경되거나 투자자문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운용실적 위험	**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운영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인해 국내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운영 위험(operational risk)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적어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또는 제한위험	다음과 같은 경우 환매가 연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거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 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환매가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운용회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상배당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에 대하여 배당락 기준으로 각 종목별 예상 배당액을 추정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이 때 예상 배당금액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정된 실제 배당금액이 예상 배당금액 보다 적어질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위험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 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1000분의 3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격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 및 해외 관련 국가들의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100% 이하 투자하는 주식 고편입 상품으로 투자신탁의 수익이 주가 등락에 따라 크게 변동되며, 설정기간이 3년 이상된 펀드로서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2등급(높은 위험)**에 해당되는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시 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원금손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해외 주식 등에의 투자를 통한 적극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하면서 해외 투자를 원하지만 직접 투자대상을 선별해내기 곤란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실제 수익률 변동성(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 1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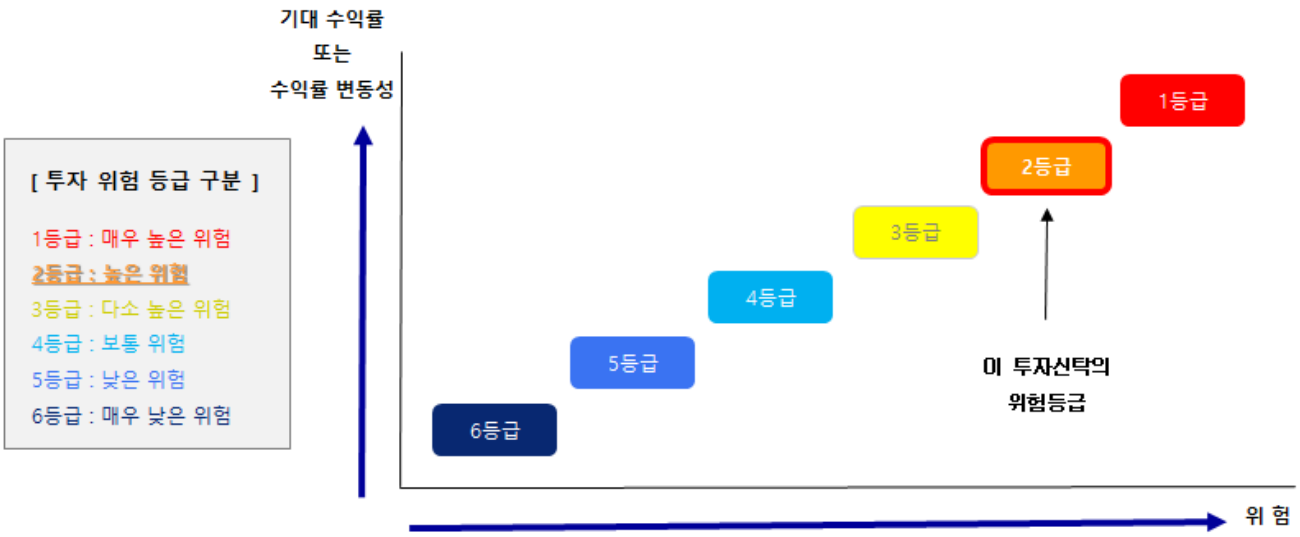

[위험등급 기준표(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제한없음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수익자가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판매회사의 특정금전신탁인 경우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수익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납입금액이 100억 이상인 개인 또는 500억 이상인 법인 라. 법에 의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다만, 제4호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를 제외한다)
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납입금액 200억원 이상인 법인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경우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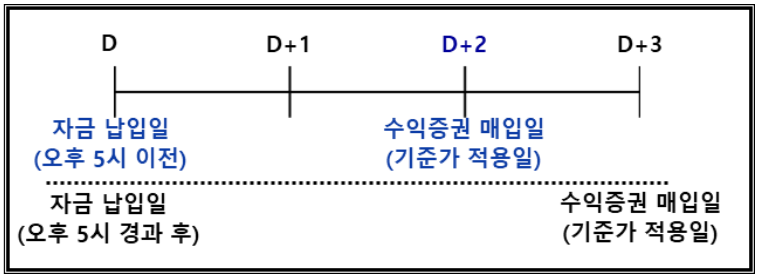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다)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금전등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전등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

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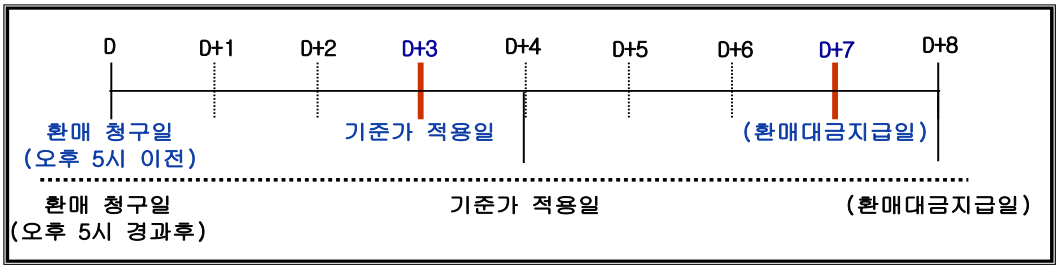

(다)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중인 금전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A	C1	C2	C3	C4	C5	C-E	S	C-G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 시

주1) 이익금 :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 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환매연기에 따른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부분환매를 결정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viamc.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시 판매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재산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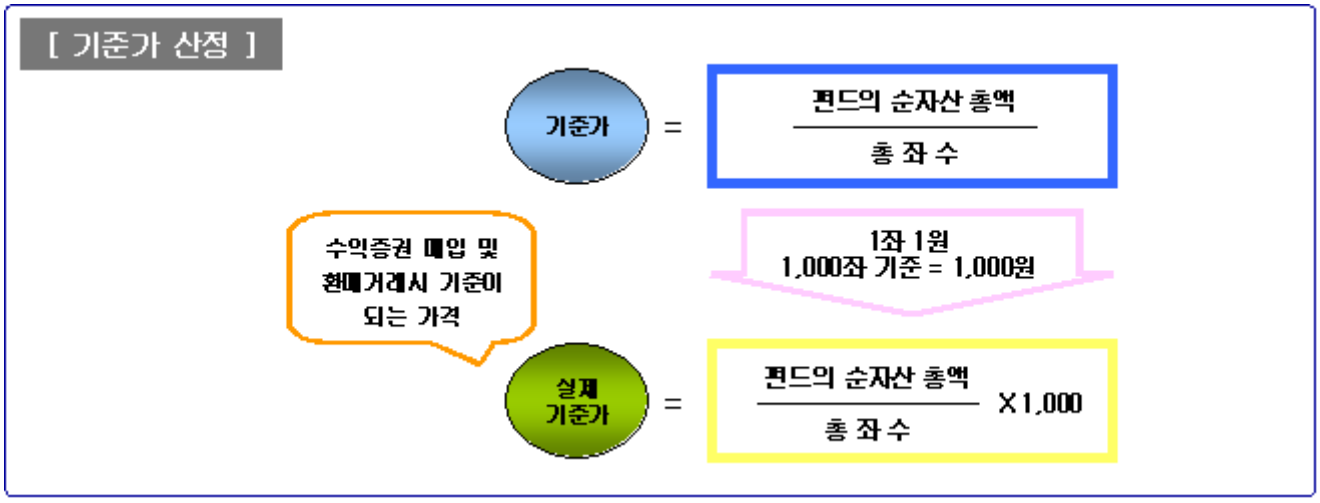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3)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집합투자재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다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인식할 수 있음
시가형성 전의 미상장주식	구주식의 평가액. 다만, 청약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유상신주로서 신주식의 평가액이 신주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함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 전날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에 의함. 다만,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평가기준일 전날 거래된 최종시가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무증권	비상장채권(상장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포함)은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상장주식 및 채무증권	평가기준일 전날에 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 외화표시 유가증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날에 공표하는 가격)에 의함. 다만,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장외파생상품 발행 및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파생결합증권의 평가방법 또한 이와 같음
부도채권등	금융투자업규정 제7-35(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에 따라 평가

주1)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상기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나 세부기준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들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table>
<tr><th colspan="2" rowspan="2">종 류</th><th colspan="4">지급비율(%)</th></tr>
<tr><th>선취판매수수료</th><th>후취판매수수료</th><th>환매수수료</th><th>기타비용</th></tr>
<tr><td>A</td><td>수수료선취-오프라인</td><td>납입금액의 1.0%이내</td><td>-</td><td rowspan="9">-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td><td rowspan="9">-</td></tr>
<tr><td>C1</td><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td><td>-</td><td></td></tr>
<tr><td>C2</td><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td><td>-</td><td>-</td></tr>
<tr><td>C3</td><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td><td>-</td><td>-</td></tr>
<tr><td>C4</td><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td><td>-</td><td>-</td></tr>
<tr><td>C5</td><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td><td>-</td><td>-</td></tr>
<tr><td>C-E</td><td>수수료미징구-온라인</td><td>-</td><td>-</td></tr>
<tr><td>S</td><td>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td><td>-</td><td>3년미만 환매시 : 환매금액의 0.15%이내</td></tr>
<tr><td>C-G</td><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td><td>-</td><td>-</td></tr>
<tr><td colspan="2">부과기준</td><td>매입 시</td><td>-</td><td>환매 시</td><td>-</td></tr>
</table>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부과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및 비용 비율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증권거래비용
A	0.9	1.0	0.06	0.025	1.985	0.1725	2.1575	1.81	2.2150	0.1746
C1	0.9	1.1	0.06	0.025	2.085	0.1722	2.2572	1.94	2.3139	0.1705

C2	0.9	1.0	0.06	0.025	1.985	-	1.9850	1.94	1.9850	-
C3	0.9	0.0	0.06	0.025	0.985	-	0.9850	1.94	0.9850	-
C4	0.9	0.03	0.06	0.025	1.015	-	1.0150	1.94	1.0150	-
C5	0.9	0.05	0.06	0.025	1.035	-	1.0350	1.94	1.0350	-
C-E	0.9	0.9	0.06	0.025	1.885	0.1621	2.0471	1.58	2.0998	0.1491
S	0.9	0.35	0.06	0.025	1.335	0.1655	1.5005	-	1.5564	0.1634
C-G	0.9	0.95	0.06	0.025	1.935	-	1.9350	-	1.9350	-
지급시기	매3개월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년도 : 2020-02-26~2021-02-25]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 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 2020-02-26~2021-02-25]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기타비용 및 금융비용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비용을 제외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은 이 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며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 해외보관대리인의 비용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해외보관대리인 간의 합의된 기일과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주7) 종류 C1의 판매회사보수율은 2010년 5월 3일부터 2013년 5월 3일까지 1년 단위로 변경되며, 이에 연동되어 총보수·비용 비율도 변경됩니다.

주8)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2021.01.29 기준]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 1,000원)

종류			1년	2년	3년	5년	10년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319	542	771	1,248	2,563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325	553	788	1,277	2,622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231	469	713	1,221	2,614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237	481	730	1,250	2,673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203	307	419	780	2,103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203	307	419	786	2,142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01	206	315	547	1,212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101	206	315	547	1,212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04	212	325	563	1,247

	기관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104	212	325	563	1,247
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06	216	331	574	1,270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106	216	331	574	1,270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210	426	648	1,112	2,395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215	437	664	1,139	2,450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54	313	478	824	1,801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160	324	495	854	1,863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98	403	613	1,053	2,275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198	403	613	1,053	2,275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합성 총보수·비용으로 산출하였으며, 증권거래비용은 제외하였습니다.

주3) 종류 S 수익증권의 경우 보유기간을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주4) 종류 A와 C1을 기준으로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9년이 되는 시점이나, 종류(클래스) 유형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5) 투자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 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

2016년 7월 18일 이후 매년 결산. 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 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 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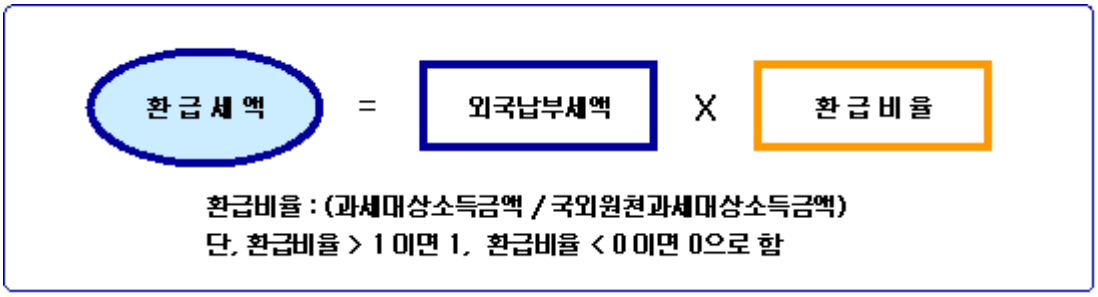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대상인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 및 해외 상장주식 매매·평가시 환차손이 과세대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의사항 ※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됩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가입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임
세제혜택적용기간	가입일부터 10년까지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4기 반기(2020.02.26 - 2020.08.25)	회계기간미경과	해당없음
제 13기(2019.02.26 - 2020.02.25)	서현회계법인	적정
제 12기(2018.02.26 - 2019.02.25)	성도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원)

요약 대차대조표			
항목	제 14기 반기	제 13기	제 12기
	(2020.08.25)	(2020.02.25)	(2019.02.25)
운용자산	50,405,941,291	50,143,418,652	49,191,985,161
증권	50,212,713,399	49,884,460,184	48,948,873,758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93,227,892	258,958,468	243,111,403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058,468,077	226,271,894	82,749,456
자산총계	51,464,409,368	50,369,690,546	49,274,734,617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301,519,438	481,076,610	322,130,410
부채총계	1,301,519,438	481,076,610	322,130,410
원본	43,058,212,826	50,585,725,058	56,887,081,158
수익조정금	-1,555,998,450	-173,970,056	-325,128,511
이익잉여금	8,660,675,554	-523,141,066	-7,609,348,440
자본총계	50,162,889,930	49,888,613,936	48,952,604,207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제 14기 반기	제 13기	제 12기
	(2020.02.26 - 2020.08.25)	(2019.02.26 - 2020.02.25)	(2018.02.26 - 2019.02.25)
운용수익	8,814,957,135	7,681,073,593	-8,651,347,914
이자수익	740,626	2,263,311	3,875,895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8,814,216,509	7,678,810,282	-8,655,223,809
기타 수익	488,398	338,837	82,801

운용비용	480,520,843	907,698,220	995,725,177
관련회사 보수	480,520,843	907,698,220	995,725,177
매매수수료	0	0	0
기타 비용	7,003,847	96,834,227	95,742,231
당기순이익	8,327,920,843	6,676,879,983	-9,742,732,521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 및 정식 재무제표의 경우 작성 기준일은 동일하나,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는 결산이 확정된 것이 아닌 결산시 이익분배금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식 재무제표의 경우 결산 후 이익분배금을 포함한 모든 손익을 확정지어 회계감사용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계정항목이나, 합계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3) 요약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각 수익증권 종류별로 보수 및 비용 등의 차이에 따라 상이합니다.

주4)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억좌, 억원)

종류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설정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해지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2020.02.26 - 2021.02.25	133	136	2	2	63	76	73	108
		2019.02.26 - 2020.02.25	172	182	2	2	19	19	155	138
		2018.02.26 - 2019.02.25	253	213	4	4	84	81	172	182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2020.02.26 - 2021.02.25	372	363	3	4	118	138	258	366
		2019.02.26 - 2020.02.25	459	464	1	1	47	43	413	351
		2018.02.26 - 2019.02.25	653	528	10	9	204	191	459	464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2020.02.26 - 2021.02.25	0	0	0	0	0	0	0	0
		2019.02.26 - 2020.02.25	0	0	0	0	0	0	0	0
		2018.02.26 - 2019.02.25	0	0	0	0	0	0	0	0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2020.02.26 - 2021.02.25	0	0	0	0	0	0	0	0
		2019.02.26 - 2020.02.25	0	0	0	0	0	0	0	0
		2018.02.26 - 2019.02.25	0	0	0	0	0	0	0	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

종류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20.03.01 ~ 21.02.28	19.03.01 ~ 21.02.28	18.03.01 ~ 21.02.28	16.03.01 ~ 21.02.28	07.02.26 ~ 21.02.28
운용펀드		54.46	32.14	14.89	16.32	7.00
비교지수		36.62	15.64	6.97	12.66	4.03
수익률변동성		20.53	16.69	16.58	15.12	15.12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51.58	29.62	12.66	14.08	4.89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51.44	29.49	12.55	13.96	4.46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51.78	29.80	12.82	9.39	5.73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52.53	30.44	13.39	14.81	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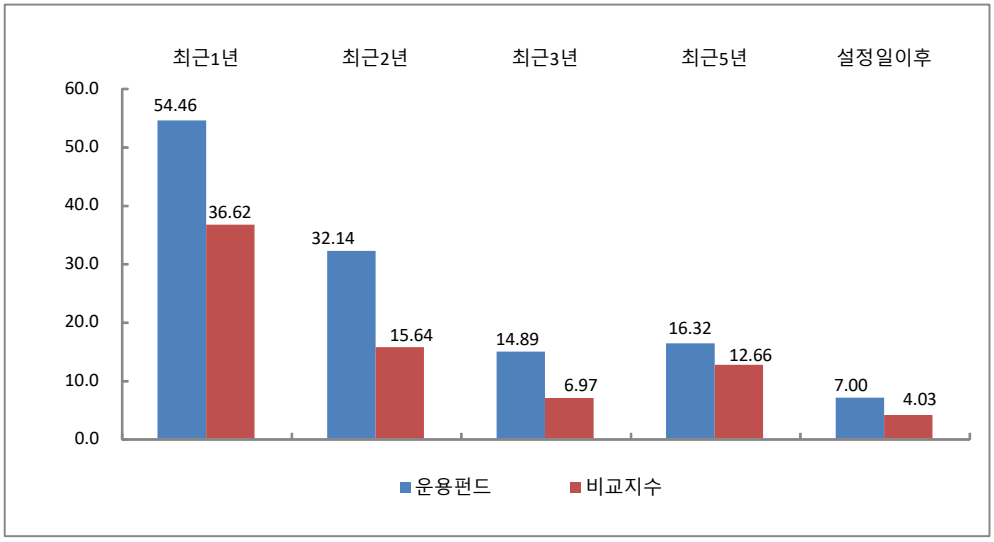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 MSCI AP ex Japan 90% + Call 10%

주2) 연평균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냅니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운용펀드)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으로 각 종류(클래스)별 설정일이 다르기 때문에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각 종류별 설정일 이후의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기 기준일에 미설정 또는 전부해지된 종류의 수익률은 표기되지 않으며, 전부해지 후 재설정된 종류의 경우에는 재설정일 이후의 수익률이 표기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

종류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03.01 ~ 21.02.28	19.03.01 ~ 20.02.29	18.03.01 ~ 19.02.28	17.03.01 ~ 18.02.28	16.03.01 ~ 17.02.28
운용펀드		54.46	13.09	-13.19	26.83	10.73
비교지수		36.62	-2.07	-8.48	21.58	21.94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51.58	10.88	-14.91	24.43	8.57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51.44	10.77	-15.00	24.31	8.46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51.78	11.05	-14.79	2.01	6.91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52.53	11.61	-14.35	25.21	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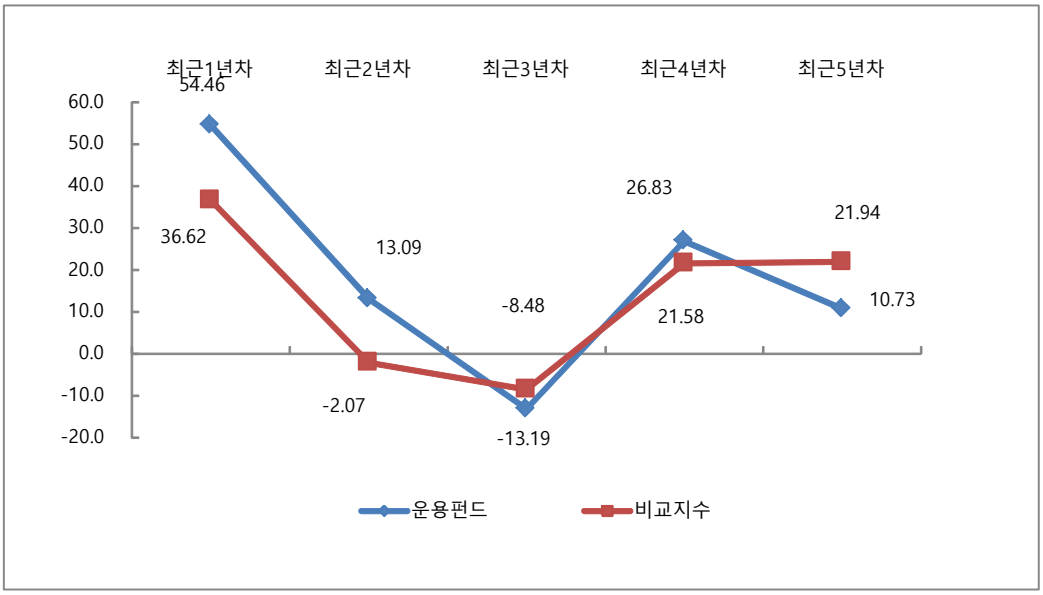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 MSCI AP ex Japan 90% + Call 10%

주2) 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 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운용펀드)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펀드분기말 2021.02.25 기준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장내	장외		실물	기타			

				투자증권				자산		및 예금		
원화	0	0	0	473	0	0	0	0	0	4	4	480
	(0.00)	(0.00)	(0.00)	(98.41)	(0.00)	(0.00)	(0.00)	(0.00)	(0.00)	(0.84)	(0.74)	(100.00)
합계	0	0	0	473	0	0	0	0	0	4	4	480
	(0.00)	(0.00)	(0.00)	(98.41)	(0.00)	(0.00)	(0.00)	(0.00)	(0.00)	(0.84)	(0.74)	(100.00)

주1) ( )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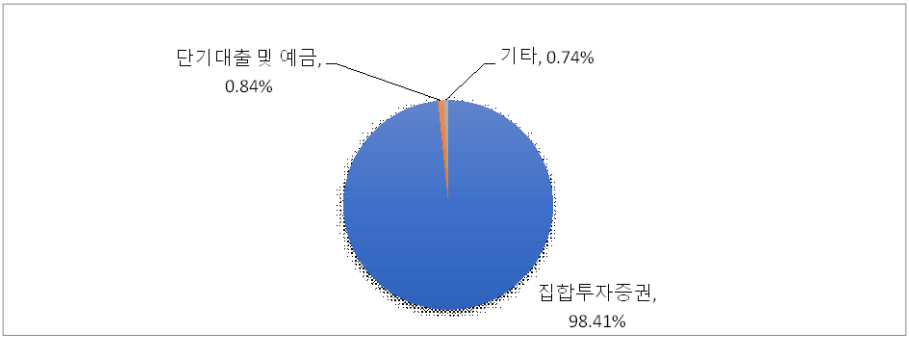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 현황]

※ 브이아이 도시화속의 아시아 우량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펀드분기말 2021.02.25 기준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55	0	0	19	2	0	0	0	0	15	3	94
	(58.93)	(0.00)	(0.00)	(19.90)	(1.69)	(0.00)	(0.00)	(0.00)	(0.00)	(16.24)	(3.25)	(20.00)
AUD	42	0	0	7	0	0	0	0	0	1	0	51
	(83.30)	(0.00)	(0.00)	(14.36)	(0.00)	(0.00)	(0.00)	(0.00)	(0.00)	(2.34)	(0.00)	(11.00)
CNH	166	0	0	0	0	0	0	0	0	7	0	172
	(96.1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82)	(0.00)	(36.00)
HKD	73	0	0	0	0	0	0	0	0	0	0	73
	(99.8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1)	(0.00)	(15.00)
IDR	2	0	0	0	0	0	0	0	0	0	0	2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INR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MYR	0	0	0	0	0	0	0	0	0	1	0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PHP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SGD	3	0	0	0	0	0	0	0	0	0	0	4
	(90.7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29)	(0.00)	(1.00)
THB	6	0	0	0	0	0	0	0	0	0	0	6

	(99.9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2)	(0.00)	(1.00)
TWD	52	0	0	0	0	0	0	0	0	0	0	52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00)
USD	0	0	0	9	0	1	0	0	0	11	0	22
	(0.00)	(0.00)	(0.00)	(43.05)	(0.00)	(5.53)	(0.00)	(0.00)	(0.00)	(51.42)	(0.00)	(5.00)
합계	400	0	0	35	2	1	0	0	0	36	3	477
	(83.85)	(0.00)	(0.00)	(7.42)	(0.33)	(0.26)	(0.00)	(0.00)	(0.00)	(7.50)	(0.64)	(100.00)

주1) ( )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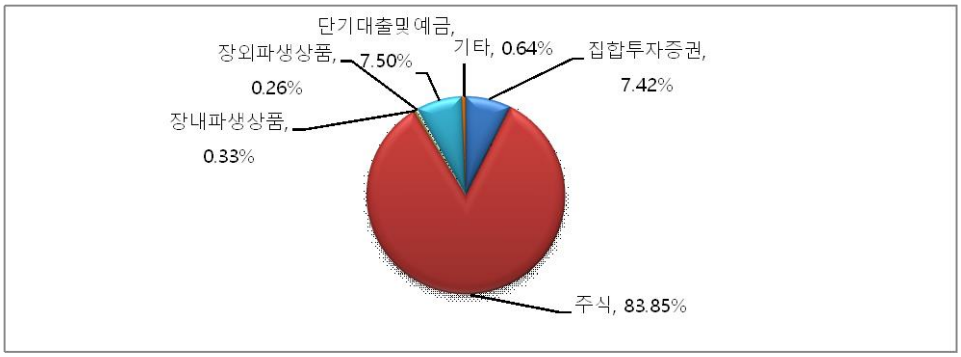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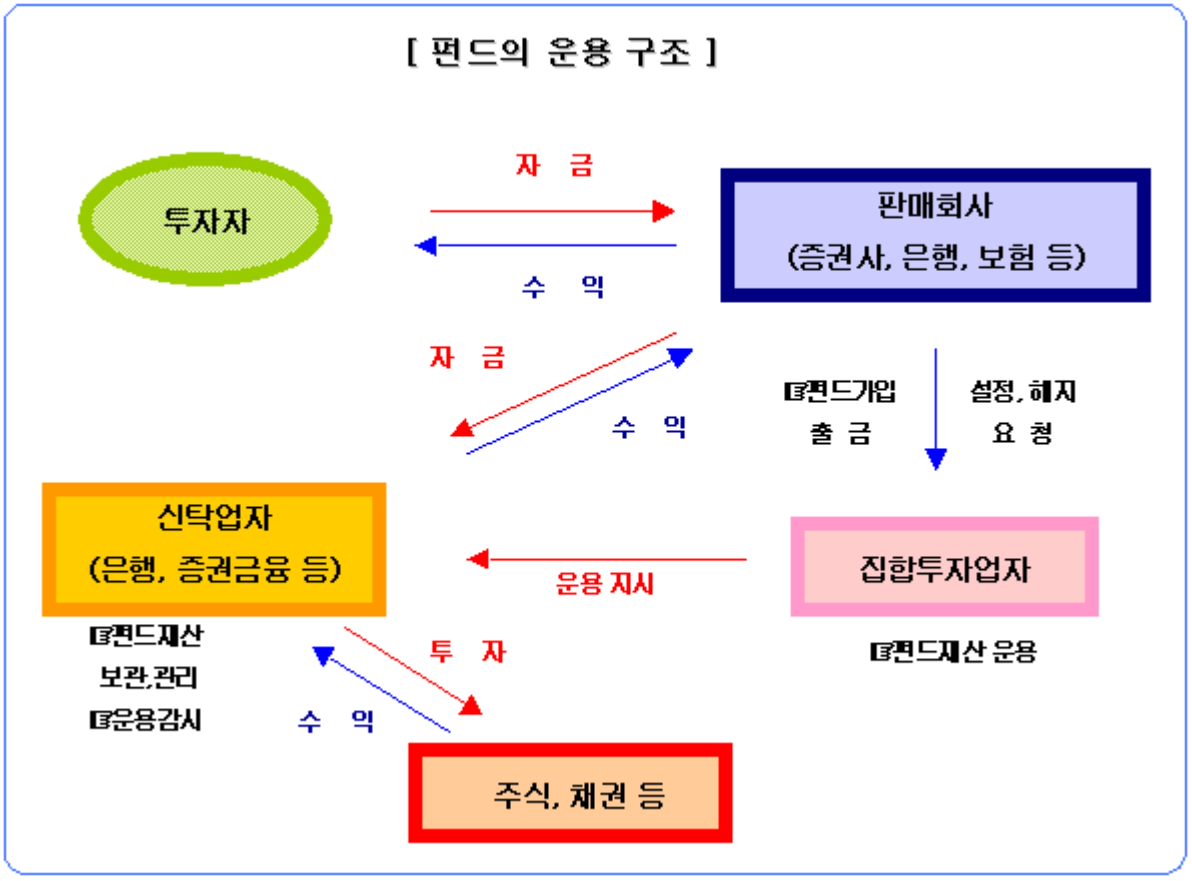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 사 명	브이아이자산운용㈜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Three IFC 16층)
연 락 처	02-727-2700
홈페이지	www.viamc.kr
연 혁	1989. 10 제일투자신탁 설립 1999. 2 제일투자신탁운용 설립 1999. 4 제일투자신탁운용 영업개시 2000. 5 투자자문업 인가 2004. 9 CJ자산운용으로 상호변경 2008. 9. 하이자산운용으로 상호변경 **2020. 1. 브이아이자산운용으로 상호변경**
자 본 금	344억
주주현황	VI Asset Management Company Limited 99.99%, 기타 0.01%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2) 선관의무 등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책임

①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신한아이타스㈜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19.12.31	2018.12.31	계정과목	2019.1.1 ~	2018.1.1 ~

				2019.12.31	2018.12.31
현금및현금성자산	6,289	20,061	영업수익	20,631	20,839
기타금융자산	23,00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FVPL-금융자산	7,740	8,318	영업비용	16,364	16,655
매도가능금융자산	-	-			
FVOCI-금융자산	1,187	1,223			
대여금및수취채권	3,984	3,583	**영업이익**	**4,267**	**4,184**
종속기업및관계기업	11,711	15,518			
유형자산	1,370	216			
무형자산	517	541	영업외수익	1,677	3
기타자산	148	134	영업외비용	204	2,056
이연법인세자산	977	1,265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5,740	2,131
자산총계	**56,923**	**50,859**			
기타부채	4,483	2,420			
당기법인세부채	658	808	법인세비용	1,362	597
퇴직급여채무	607	898			
부채총계	**5,748**	**4,126**			
자본금	34,408	34,408	**당기순이익**	**4,378**	**1,534**
기타불입자본	2,327	2,327			
기타자본구성요소	380	408	기타포괄손익	65	△354
이익잉여금	14,061	9,590			
자본총계	**51,176**	**46,733**	당기총포괄손익	4,443	1,180

라. 운용자산 규모

(2021. 2. 28 현재 / 억원)

집합투자기구	증권					부동산/부동산파생	특별자산/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혼합자산파생	MMF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형	재간접형					
수탁고	7,753	4,778	17,897	6,582	5,239	4,158	21,816	540	17,458	86,22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국민은행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연 락 처	1588-9999
홈페이지	www.kbstar.com 1963. 2 . 1(구 국민은행) 2001. 11. 1(국민.주택은행 합병)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②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③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④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⑤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수익금, 임대료 등의 수령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⑦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해외보관 대리인]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① 집합투자규약 제17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② 상기 ①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
③ 상기 ① 및 ②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2) 의무 및 책임

(가) 의무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 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 결과

(나)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연 락 처	02) 2168-04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2000. 6 법인설립 2008.5 신한은행 자회사로 편입 www.shinhanaitas.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의무 및 책임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2251-130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 02-3215-140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00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회사연혁 등	설립일 : 2000.5.29	설립일 : 2000.6.20	설립일 : 2000.6.15	설립일 : 2011.6.9

(홈페이지)	(www.koreaa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 평가 및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②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③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가) 수익자총회의 소집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나)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

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 연기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②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③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

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

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증권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① 이 상품의 신탁계약서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②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③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④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⑤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②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상기 ③ 및 ④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가) 영업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법 제88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나)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②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

의 비율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시행령 제92조제2항에서 정하는 매매회전율

⑤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다)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③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 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와 같이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④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⑤-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⑦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⑨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viamc.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

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⑪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①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②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성명(상호)	관계	거래의 종류	자산의 분류	거래금액
해당사항 없음				

[이해관계인의 범위]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

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선정원칙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②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블록매매, 차익거래매매, 파생상품매매,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③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평가항목	1.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중개회사 및 통화관련 장내파생 상품의 중개회사 ① 재무건전성 ② 정보제공정도 및 수준(운용지원 및 세미나 개최 등 포함) ③ 결제이행능력(매매업무의 신속, 정확성 등) 2. 상장지분증권 및 상장지분증권 관련 장내파생상품의 중개회사 ① 정보제공 정도 및 수준(기업분석 자료 및 운용지원) ② 기업방문 및 NDR 협조 ③ 운용관련 세미나 ④ 요청자료 협조(운용에 필요한 자료요청 등) ⑤ 결제이행 능력(매매업무의 신속, 정확성 등)

주1)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운용상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평가항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가나다순)	내 용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기업공개	주식의 대중화와 기업재무 내용의 공시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주식회사 체제를 갖추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개인이나 소주주로 구성되어 폐쇄성을 띠고 있는 주식회사가 그 주식을 법정절차와 방법에 따라 균일한 조건으로 일반 대중에게 매출 또는 모집한 후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킴으로써, 회사의 재산상태와 영업활동의 결과 및 주요계약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은 공고일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그 공고일 전일의 펀드 수익증권 총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계산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형태를 말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말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법령 및 신탁계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 할 때 펀드의 모든 투자자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신탁계약에 따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말합니다.
투자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즉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통상 연 %로 표시되며, 투자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펀드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신탁업자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라 하며,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통상 펀드라고 말하며, 대표적으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집합투자업자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펀드에 대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을 말합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이미 설정된 펀드에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해지	펀드의 신탁계약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펀드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중도환매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펀드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로서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다시 펀드재산에 편입됩니다.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다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 등을 사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는 선물환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